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등 >

- 민형배의원 · 신장식의원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668호)
- 김성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7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1.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1
2. 김성회의원안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1
2. 김성회의원안	2
III . 검토의견	4
1. 집단행위 금지 적용 배제 규정의 삭제 (민형배·신장식·전종 덕의원안 및 김성회의원안 제1조)	4
2.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삭제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및 김성회의원안 제3조 삭제)	8

I. 제안경위

1.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2024년 7월 12일 민형배의원·신장식의원·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김성희의원안

2024년 7월 17일 김성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교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전면 제약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도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교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및 제3조 삭제).

2. 김성회의원안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집단행위 금지 적용 배제 규정의 삭제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및 김성회의원안 제1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김성회의원안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삭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862호)에 맞추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현행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김성회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	제1조(목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제1조(목적) -----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하고 교원에 적용할	-----	-----
「노동조합 및 노동	-----	-----
관계조정법」에 대한	---	-----
특례를 규정함을 목		-----.
적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¹⁾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²⁾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 또한 집단행위가 금지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원노조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제1조에 명시함으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써 교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두 개정안은 교원에 대해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유사함.

구체적으로,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별도의 법률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한 「사립학교법」상의 각종 의무규정과 관계 없이 교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임.

반면 김성회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맞추어 교원노조법을 정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의 집단행위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다만,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교원노조의 구성원인 교원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집단행동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고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김성회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김성회의원 대표발

의, 의안번호 제2201862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법안의 심사 경과에 맞추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집단 행위 금지 규정과 교원노조법 상 노조활동 허용이 상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경북·대구·대전·부산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1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 관련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 내용이 전제되어야 맥락상 의미가 연결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경기교육청은 타 교육청과 같은 맥락의 신중 검토 의견과 함께 일부 교원 및 학교가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행위 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 금지)³⁾ 삭제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찬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성의견도 제출하였음.

2.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삭제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및 김성희의원안 제3조 삭제)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두 개정안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임.

현행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원안, 김성희의원안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나. 검토의견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4)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벌을 부과하며⁵⁾, 기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서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규제⁶⁾하고 있음.

한편,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⁷⁾ 및 제14조제4항⁸⁾ 및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⁹⁾은 교육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5)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6)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8)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금지되고 있는 점¹⁰⁾과 비교할 때 강한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교육의 교육적 중립), 교육이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의미한다”고 설시¹¹⁾한 바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서는 ①‘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정치적 기본권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②이미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이중규제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1) 현재 2014. 8. 28. 2011헌바32

에 해당하며, ③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의 교원도 교원노조법을 적용받게 되어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¹²⁾되나, 「정당법」에 따라 대학교원의 정당 가입 등이 허용¹³⁾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허용된 정치활동의 자유가 집단에서는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¹⁴⁾

이에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미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교원노조법 제3조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①교원노조법 규정이 비록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일정한 범위 내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교원의 행위가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교원노조의 이름으로 대규모로 행해지는 정치적 표현행위가 건전한 세계관·인생관을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13)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면서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 또는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의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음.

14) 신인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통한 교원노조법 개정 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0.8.18.

형성할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점,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③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으로 인해 교원노조의 업무·활동에 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은 교원노조에도 허용되는 점 등을 볼 때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¹⁵⁾

둘째, 개정안과 같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교원노조의 조합원인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해당 법률에 따른 정치적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①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수차례의 논의¹⁶⁾ 및 여론 수렴¹⁷⁾ 등을 거쳐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98.10.31.)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는 심도 깊은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 법률을 두루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고, ②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 제

15)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동 결정에서 4인의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3인의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음.

16) 노사관계소위원회(8차례) 및 교원노조 관련 실무소위원회(8차례) 등

17) 교원노조 결성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98.9.23. 노사정위원회 주최),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98.9.30., '98.10.14. 노동연구원·교육개발원 주최), 여론조사('98.9.29~10.1. 교원·학부모 등 2,564명) 등

7조제2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③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측면과 함께 단체로서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개인으로서의 교원의 정치활동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경북·대구·대전·부산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3조 삭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 및 법적·정책적 숙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경기교육청은 타 교육청과 같은 맥락의 신중 검토 의견과 함께 일부 학교 및 교원이 제시한 정치활동 금지를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¹⁸⁾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5

18) “교원의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에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